

TRADE BRIEF

통상연구실

민 경 실 연구원 02-6000-5498, ksmin23@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영국의 EU 탈퇴 통보 및 향후 전망

지난 3월 29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면서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을 기점으로 2년 동안의 탈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EU 27개국은 4월 29일 정상회의를 통해 EU 협상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예정으로 영국-EU의 실제 협상은 5~6월이 될 전망이다. 이미 양측이 협상 진행방식, 탈퇴 비용, 시민의 권리 보장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의견 대립하고 있어 향후 2년 간의 협상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와 무역 유관기관들은 한·영 FTA 추진에 대비하여 브렉시트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영국과 민간 협력채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01.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추진 현황

- ◎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된 이후 9개월 만인 3월 29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리스본조약 50조가 발동
 - 팀 배로우 EU 주재 영국 대사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적시한 서한 전달
 -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을 기점으로 2년 동안의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

영국의 주요 브렉시트 협상 추진 경과

일시	주요 내용
2016. 6. 23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찬성 51.9%, 반대 48.1%)
2017. 1. 24	英 대법원,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
2017. 1. 26	英 정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위한 EU 탈퇴법안(EU Bill)을 의회에 제출
2017. 2. 1	하원 1차 표결 결과, 찬성 498 반대 114로 통과
2017. 2. 8	하원 최종 표결 결과, 찬성 494 반대 122로 통과
2017. 3. 1	상원에서 수정안 제시, 표결 결과 찬성 358 반대 256로 수정안 가결
2017. 3. 13	하원 수정안 부결 → 상원 원안대로 통과
2017. 3. 16	EU 탈퇴법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받아 입법 완료
2017. 3. 29	영국의 EU 탈퇴 의사 공식 통보 및 협상 개시

주 : 영국 내 EU 시민의 권리 보장과 브렉시트 협상 법안에 대한 의회 승인권을 부여하는 내용 포함
자료 : 영국 의회 사이트(www.parliament.uk)

02. 영국의 협상 전략 및 평가

- ◎ 메이 총리는 서한을 통해 탈퇴 후에도 EU와 깊고 특별한 파트너십(deep and special partnership)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향후 협상에서 고려할 7가지 원칙을 제시
 - 우선적으로 영국은 탈퇴협정과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 고수
 - 2년 내 새로운 협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시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혜택을 모두 상실하게 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교역해야 함
 - 이는 EU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영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영국이 새로운 협정 합의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
 - 단, 전체적으로 ‘배드 딜(bad deal) 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기존의 강경한 자세에서 물러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임
 - EU 측은 탈퇴 협상 과정에서 영국에 유리한 것만 챙기는 체리피킹(cherry-picking)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 초반에 시민의 권리 보장, 이행 기간 설정 등의 사안에 대해 관련 원칙을 합의할 것을 제안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7가지 원칙

	원칙	내용
1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설적이며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상	EU 측의 방침을 이해하는 바, 이동의 자유와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사이에서 체리피킹(cherry-picking)은 없을 것이라며 단일시장으로 부터의 이탈을 시사
2	시민의 이익이 최우선	영국 내 EU 시민 및 EU 내 영국 시민의 권리에 대한 조기 합의 도모
3	포괄적인 협정 추진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특별한 파트너십 지속
4	혼란과 불확실성의 최소화	이행 기간의 설정 등으로 투자 및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 제거
5	아일랜드와의 관계 및 북아일랜드와의 평화협정에 주의	브렉시트로 인해 아일랜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협상 초기에 북아일랜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 표명
6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 추진	영국 경제의 핵심인 금융 서비스와 네트워크 산업을 포함한 폭넓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조
7	EU와 공동의 가치 발전 및 보호	유럽 각국이 공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증진시키고 보호함으로써 세계를 리드해나갈 것을 희망

- ◎ 이와 동시에 영국은 EU 법을 영국 법으로 대체하는 대 폐지 법안(Great Repeal Bill)을 준비하고 5월에 예정된 의회에서 심의할 예정
 - 대 폐지 법안은 1972년 도입된 유럽 공동체 법안(European Communities Act)을 폐지하고 EU 법을 영국 법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영국은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관할에서 벗어나게 됨

03. EU의 협상 전략 및 평가

- ◎ 영국의 탈퇴 통보 접수 후,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월 31일 EU 협상 가이드라인을 27개 회원국에 제시
 - EU 27개국은 4월 29일 EU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협상 가이드라인을 승인하고 세부 협상지침을 마련할 예정
- ◎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가이드라인에서 영국이 원하는 탈퇴협정과 새로운 협정의 동시 병행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단계적 접근(phased approach)을 취할 것을 시사
 - EU 시민과 기업, 회원국들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퇴 협의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사 표명
 - 단, 탈퇴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진전(sufficient progress)’이 있을 경우 영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
 - 가이드라인 상 ‘충분한 진전’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적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4월 29일 EU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¹⁾

EU 협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핵심 원칙	• EU 탈퇴 후에는 회원국과 동등한 권리 및 혜택은 취할 수 없으며 단일시장의 4가지 자유는 불가분 •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협상은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되며 EU 회원국과의 개별 협상은 불가능
협상에 대한 단계적 접근	• 탈퇴와 동시에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단절 • 탈퇴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을 시 미래 관계에 대한 협의 착수 •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하는 이행 협정(transitional arrangement) 검토 가능
질서있는 탈퇴 합의	• 영국 내 EU 시민과 EU 내 영국 시민의 권리 보호가 우선 협상 대상 • EU 탈퇴 후 법률 부재 문제 해결 • EU 예산의 미지급금 등 탈퇴비용 합의 • 아일랜드 등 영국 역외 국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 • 영국 내 EU 기관의 이전 합의 • 적절한 분쟁해결 메커니즘 포함
미래 관계의 틀에 대한 잠정적이고 준비적인 협의	• 미래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협정은 영국이 회원국이 아닐 때 논의 가능 • 단일시장 참여나 부분적 참여는 불가능 • 무역 이외 안보와 국방, 범죄 및 국제테러 측면에서 협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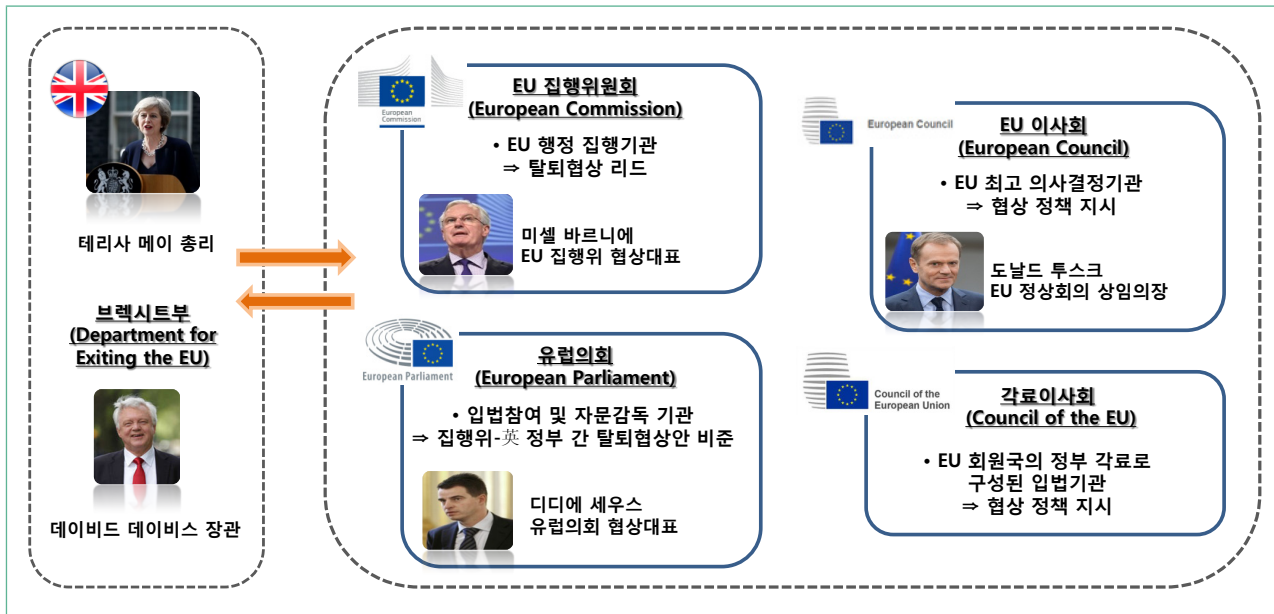
- ◎ 유럽의회가 4월 5일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하여 ‘先 탈퇴, 後 새로운 협정 착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영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임
 - 전체 표결에서 찬성 516표, 반대 133표, 기권 50표로 결의안 가결

1) Financial Times, “The EU’s Brexit negotiation guidance decoded”, 2017

04. 향후 일정 및 전망

- ◎ 양측간 실제 협상은 EU 이사회가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에게 협상 진행 권한을 위임하는 5~6월에 개시될 전망
 - EU 측에서는 미셸 바르니에 협상대표를 중심으로 EU 집행위원회가 탈퇴 협상을 주도하는 가운데 EU 이사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 EU 이사회 및 각료이사회는 큰 틀에서 협상 정책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유럽의회는 최종적으로 브렉시트 협상 내용에 대해 비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²⁾
 - 영국 측에서는 테리사 메이 총리 책임 하에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Department for Exiting the EU) 장관이 주축이 되어 협상을 진행할 예정

양측 협상대표 및 EU 의사결정 구조



자료 : 언론 자료 종합·정리

- ◎ 협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영국 및 유럽의회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0월 까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
 - *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하여 유럽议회의 승인과 함께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원칙에 따라 EU 27개국 중 72%(해당 국가들 인구가 EU 전체의 65%)의 찬성을 받아야 함
- ◎ 단, 영국과 EU 간 탈퇴 비용(Brexit Bill), 시민의 권리 등의 사안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탈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탈퇴 비용) 양측간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탈퇴 비용에 대한 합의에 따라 새로운 협정의 협상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2) The Lisbon Treaty

-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당시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하여 600억 유로를 제시했으나 영국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힘

- (시민의 권리 보장) 영국에 거주 중인 EU 시민 300만 명과 EU 내 영국 시민 100만 명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 필요

- 영국 측은 협상 기간 동안 이주민 급증을 이유로 EU 시민의 이동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나 EU 측은 영국이 완전히 탈퇴하기 전까지는 시민의 이동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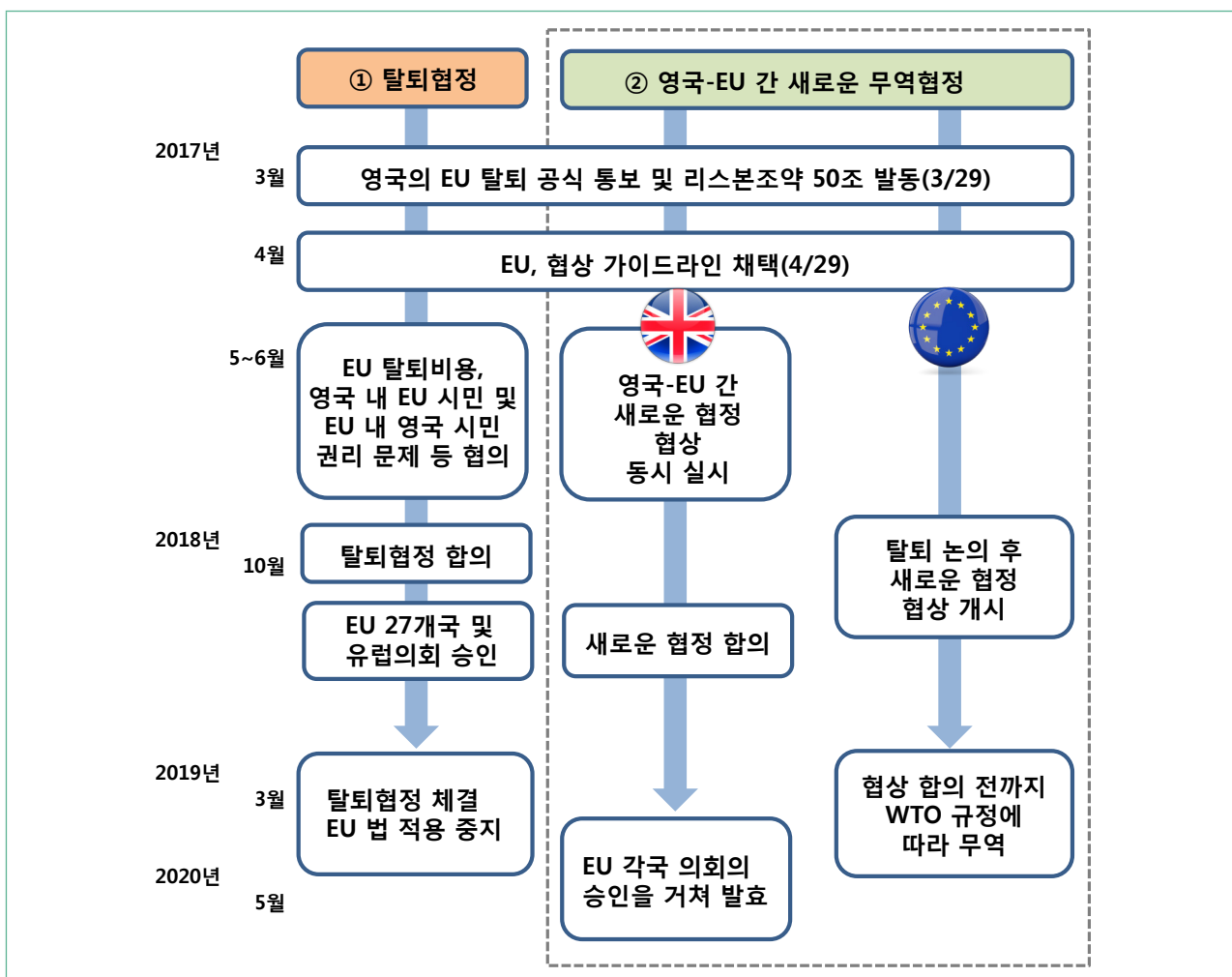
- (EU 법 대체) 브렉시트로 인한 갑작스런 절벽(cliff edge)을 피하기 위해 EU 법 대체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영국 측은 EU 탈퇴 시점부터 유럽 법원의 관할에서 벗어나 국가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나 EU 측은 이행 기간까지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권 적용을 인정하도록 요구

- 2년 내 탈퇴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협상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시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로부터 자동 탈퇴

*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협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EU 27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

향후 예상 프로세스



자료 : 미즈호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05. 결론 및 시사점

- ◎ 양측이 2년에 걸쳐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하는 만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협상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
 - 탈퇴 비용 납입, 시민의 권리 보장 등의 문제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영국의 목표대로 2019년 3월까지 탈퇴협정 및 새로운 협정에 합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 과거 EU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 협상이 4~8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영국과 미래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몇 년이 걸릴 가능성도 존재
- ◎ 이외에도 영국과 EU 각각 내부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은 스코틀랜드가 EU 잔류를 위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면서 영국 연방이 분열 위기를 겪고 있음
 - 탈퇴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EU 단일시장 접근 등이 보장되지 않을 시 스코틀랜드 내 독립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 EU 입장에서는 프랑스 대선(5월), 독일 총선(9월) 등 주요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탈퇴 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최근 탈EU를 주장하는 극우·포퓰리즘 세력이 확산되고 있어 EU 측은 더 이상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영국에 결코 유리한 협상을 해주지 않을 전망
- ◎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영국과 EU 간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협상이 시작되면 한·영 FTA를 비롯하여 영국이 EU 차원에서 체결했던 FTA에 대한 양자협상 시기와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특혜가 소멸되고 영국의 MFN 실행세율이 부과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영 FTA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것임
- ◎ 한·영 FTA 추진에 대비하여 영국과의 민관 협력채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민관 협의회 등의 운영을 통해 한·영 FTA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